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현행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과 「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」에 분산되어 있는 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관련 규정을 소관과 기능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

이에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의 개정에 따라 삭제되는 관측망의 계획,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의 설치, 관측기관 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의 체계에 맞게 반영하고, 지진·지진해일·화산 관측기관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측 관련 제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 간 정합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지진·지진해일·화산 관측망 계획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4조)

- 기본계획에 지진·지진해일·화산 관측망의 구축·조정·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, 이 중 지진해일 관측망(조위계에 해당)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과 공동으로 마련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

나. 관측기관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6조)

- 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을 관측하는 관측기관의 범위를 정하고, 관측기관이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관측계획서를

작성하여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

다. 지진·지진해일·화산 관측기관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(안 제6조의2 신설)

- 지진·지진해일·화산 관측망의 운영, 관측기관 간 협력,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의 설치, 관측결과 등의 공유·통보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관측기관이 참여하는 관측기관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

라. 지진·지진해일·화산 관측소 지원 대상에 관한 인용조문 정비(안 제8조)

- 관측기관의 범위를 이 법 제6조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측소 설치·운영에 대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 대상에 관한 인용조문을 정비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2호 중 “관측망”을 “관측망의 구축·조정·운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“제5항”을 “제6항”으로 한다.

③ 기상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사항 중 지진해일 관측망(조위계에 해당한다)의 구축·조정·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과 공동으로 마련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6조의 제목“(관측소 및 관측망 구축·운영)”을“(관측소 및 관측망 구축·운영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(이하 “관측기관”이라 한다)의 장은 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를 설치하려면 지진·지진해일·화산 관측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
1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

법률」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

2. 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
3. 「한국전력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소속의 전력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
4. 해양수산부 소속의 해양 관련 조사·연구를 수행하는 기관
5. 그 밖에 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를 설치하여 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을 관측하는 기관과 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
③ 제2항에 따른 지진·지진해일·화산 관측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진·지진해일·화산 관측의 목적과 관측장비의 설치사유
2. 지진·지진해일·화산 관측장비의 설치 위치 및 성능·규격
3. 지진·지진해일·화산 관측자료의 획득 및 전송·저장방법
4. 지진·지진해일·화산 관측결과의 활용방안 등
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측소 및 관측시설·관측장비의 설치와 관측망의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지진·지진해일·화산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등) ① 기상청장은 지진·지진해일·화산 관측망 운영, 관측기관 간의 협력 강화,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 설치, 관측결과등의 공유와 통보 등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관측기관

이 참여하는 지진·지진해일·화산 관측기관협의회(이하 “관측기관협의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·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관(이하 “관측기관”이라 한다)”을 “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제6조제2항에 따른 관측기관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) ① (생략)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(생략) 2. 지진·지진해일·화산 <u>관측망</u> 및 지진경보체제의 구축·운영 3. ~ 7. (생략) <u><신설></u> ③ ~ ⑤ (생략)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·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제4조(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관측망의 구축·조정·운영</u> ----- -- 3. ~ 7. (현행과 같음) ③ 기상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사항 중 지진해일 관측망(조위계에 해당한다)의 구축·조정·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과 공동으로 마련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④ ~ ⑥ (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) ⑦ ----- 제6항----- ----- ----- -----.
제6조(<u>관측소 및 관측망 구축·운영</u>) ① (생략)	제6조(<u>관측소 및 관측망 구축·운영 등</u>) ①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(이하 “관측기관”이라 한다)의 장은 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를 설치하려면 지진·지진해일·화산 관측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
1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

2. 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

3. 「한국전력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소속의 전력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

4. 해양수산부 소속의 해양 관련 조사·연구를 수행하는 기관

5. 그 밖에 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를 설치하여 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을 관측하는 기관과 단체

② (생략)

③ 제1항에 따른 관측소의 설치 및 관측망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신설>

<신설>

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
④ (현행 제2항과 같음)

③ 제2항에 따른 지진·지진해일·화산 관측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진·지진해일·화산 관측의 목적과 관측장비의 설치사유

2. 지진·지진해일·화산 관측장비의 설치 위치 및 성능·규격

3. 지진·지진해일·화산 관측자료의 획득 및 전송·저장방법

4. 지진·지진해일·화산 관측결과의 활용방안 등
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측소 및 관측시설·관측장비의 설치와 관측망의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조의2(지진·지진해일·화산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등) ① 기상청장은 지진·지진해일·

제8조(지진·지진해일·화산 관측소 지원) ①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(이하 “관측기관”이라 한다)이 지진·지진해일·화산 관측소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1.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2. (생략)	<u>화산 관측망 운영, 관측기관 간의 협력 강화,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 설치, 관측결과등의 공유와 통보 등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관측기관이 참여하는 지진·지진해일·화산 관측기관협의회(이하 “관측기관협의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</u> <u>②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·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 제8조(지진·지진해일·화산 관측소 지원) ① ----- ----- 기관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제6조제2항에 따른 관측기관 2. (현행과 같음)
---	---
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---------	------------